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91

2015. 12. 1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5. 11. 16. 김미경 의원 발의, 2015. 11. 17. 회부

2. 제안이유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층주택, 저층주거지, 집수리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관련주체별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집수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집수리 공사비용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우수 집수리업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5. 검토의견

□ 배경 및 구성

○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의 주택 개량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5년 11월 16일 김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조례안의 구성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저층주택의 점검(안 제5조), 집수리 지원사업 및 공사비용 지원(안 제6조, 안 제8조),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안 제11조), 재원(안 제13조) 등 총 1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요 내용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층주거지 주택 개량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 저층주택 점검,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비용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등 서울시가 다각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5년 단위로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20년이 경과한 저층주택은 2년마다 성능개선·에너지절감·구조안전 등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되, 관리주체의 요청시 시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저층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운영,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집수리 공사비용은 공사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하거나, 공사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1].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외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검토사항

○ 서울시가 현재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구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111㎢가 저층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 4층 이하 저층주택 중 72%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되고 있으며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대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저층주택의 주택개량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9조(사업비의 융자 등)와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를 참고하여 제시함.

제39조(사업비의 융자 등)④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 공사비 80퍼센트 이내**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40퍼센트 이내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⑥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중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주택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집수리지원센터 및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저층주거지의 주택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주택수명 연장을 통해 자원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이 조례안은 의미가 크다고 사료됨.

- 특히 현행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위주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일단의 도시재생사업이 적용되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국한하여 운영된 데 반하여 일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가 하면 주택 개보수를 통한 저층주거지 재생 성과도 부진하게 되는 문제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요컨대 집수리 공사비용 보조지원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중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등 예외적 한정적 범위에서 적용되었다면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음. 한정된 예산임을 감안할 때 보조·융자 지원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구역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주택 개보수 문화 확산, 우수 집수리업체 양성 등 지속가능한 주거지 관리 측면에서 일반지역까지 재정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사료됨.

-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주택개량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원제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주택개량 관련 지원이 특정지역이나 특정

대상에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현재 서울시는 집수리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구역에 2개소, 도시재생사업구역에 4개소 등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2017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설치 계획), 주택진단서비스 및 공구 임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 조례안 제정 후에는 오는 '17년까지는 자치구별 1개소(총 25개소), 오는 '19년까지는 자치구별 4개소(총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구분	종로구 창신숭인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해방촌	성북구 장위동	은평구 산새마을	금천구 시흥동
유형	도시재생사업 구역	도시재생사업 구역	도시재생사업 구역	도시재생사업 구역	주거환경관리 구역	주거환경관리 구역
상담 사	마을건축가	집수리협동조합 +건축사	KH리모델링 +건축사	동네목수, SH공사 +건축사	두꺼비하우징 +건축사	더나은건축디 자인협동조합 +건축사
현장 사진	 현장지원센터	 현장소통마당	 현장지원센터	 구역내 유휴점포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 2014년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14.11.29)에 따라(붙임 1), 구청장이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자치구 사무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자치구 재정여건은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 저층주거지 주택개량의 행정 서비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점차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자치 사무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참고로 이 건축법령 입법 취지에 충실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치구는 현재 없으며 대부분의 자치구는 구청 내 사무공간에서 건축법 위주의 상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건축 관련 자치구 상담실 운영 현황

- 장소 : 구청 건축과 내 사무공간 활용
- 내용 : 건축법, 주택개량 상담(건축 인허가, 특정건축물, 민원서류 작성 등)
- 인력 : 건축사 배치(무료, 자치구 건축사회 연계)
- 운영 일시

빈도	주 1회	주 2회	주 3회	매일	미 운영
자치구 수	9	3	1	7	5

* 상담실 미 운영 자치구 : 동대문, 중랑, 강북, 강서, 구로

<서울시(주거환경개선과) 내부자료>

○ 끝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자금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세출용도에 신설하여 이 조례안과 연동하는 것이 제도적 연계성 및 안정적 재원 마련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규정 현황

건축법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2]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붙임 2> 주택개량지원 관련제도 (서울시 자료)

기관 (부서)	관련규정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	융자	주택도시기금 주택개량 지원(국토부) – 대상 : 건축인허가 대상 신축, 대수선 – 20년이상, 전용 85㎡이하 – 내용 : 금리 2.0~2.7%, 3년거치 17년균등분할 ① 개량 : 단독 최대 1,500만원 ② 신축 : 단독 최대 6,000만원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건축물 개량 및 정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택개량 융자지원 – 내용 : 0.7% 융자, 3년거치 10년균등분할 ① 개량 : 단독 최대 4,500만원 ② 신축 : 단독 최대 9,000만원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정비기금의 용도 : 정비구역 내 주택개량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시장은 주거환경관리구역 중 역사문화적 특성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규제지역 등에 주택개량비용을 예산범위내 공사비용의 1/2까지 보조 지원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사업비의 융자 등) – 시장은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을 80%이내에 융자할 수 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정비구역 안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금	융자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개량 융자지원 – 내용 : 0.7% 융자, 3년거치 10년균등분할 ① 개량 : 단독 최대 4,500만원 ② 신축 : 단독 최대 9,000만원 [이외, 일반지역] 주택개량 융자 이자지원 – 내용 : 금리의 2%보조, 5년 균등분할 ① 개량 : 단독 최대 4,500만원 ② 신축 : 단독 최대 9,000만원
		보조	[주거환경관리구역] 성곽마을 집수리 보조금 지원 – 내용 : 자붕포함 집수리 1,200만원/동 지붕 외 집수리 600만원/동 – 비고 : 건축지침 준수, 전문가 심의 및 승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에너지 성능지표 80점이상 건축물 ②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③ 사용승인 후 5년이상 건축물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융자	녹색건축물 지원(서울시) – 신축시 취득세 경감(5%~15%) – 재산세 경감(3%~15%) –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 건축기준 완화(4%~12%)

기관 (부서)	관련규정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④ 기타 국토부장관이 자금 지원 또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8조(녹색건축물의 조성지원 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약 1천만원 내외)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융자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국토부) – 대상공사 ① 건물단열 향상 ② 에너지 관리장치 ③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공사 ④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 공사 – 지원내용 ① 최대 2천만원 융자(금융권) ② 이자지원(2%~4%, 에너지 성능비율) – 5년간 지원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건축의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 시장은 등록한옥의 소유자 또는 한옥등록예정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융자	한옥 신축 및 지원사업 1.한옥 수선 – 내부 : 공사비 범위, 최대 4천만원 융자 2. 한옥 신축 – 내부 : 공사비 범위, 최대 2천만원 융자 ※ 무이자, 3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 지원결정시 지급
		보조	한옥 신축 및 지원사업 1.한옥 수선 – 외관 : 공사비의 2/3, 최대 6천만원 보조 2. 한옥 신축 – 외관 : 공사비의 2/3, 최대 8천만원 보조 3. 한옥 부분수선 – 1,2의 지원받아 5년경과된 한옥 지붕수리시 공사비 범위 최대 1천만원 보조 ※ 보조는 공사완료 후 지급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융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 주택 : 2백만원~1천만원 (다가구는 층별 1천만원 이내) – 건물 : 5백만원~20억원 – 금리 : 연 1.75%, 8년균등분할상환 – 내용 ① 건축 : 단열재,단열창호,창유리필름 등

기관 (부서)	관련규정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②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홍보 및 교육 ③ 건물 및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연구조사기술개발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② 기계 : 냉난방 효율공사(보일러 등) 폐열회수설비,자가열병합발전시설 건물자동화제어장치 ③ 전기 : 고효율 LED 등 ④ 기타 : 신재생에너지, 벽면녹화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 제25조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단가 설정 및 정액지원 – 단독,공동주택, 10가구이상 마을단위	보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그린홈, 산업부) – 대상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지원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① 태양광(단독) : 1,010천원/kw 등 ② 태양열(평판) : 570천원/㎡ 등 ③ 지열 : 750천원/kw 등 ④ 연료전지 : 28,420천원/kw 등 – 비고 : 주택개별, 또는 마을단위로 신청가능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지원대상) ① 지붕면적 1천㎡미만의 건축물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② 기존의 공동주택(5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연립	보조	빗물관리시설 민간분야 설치지원 – 대상 : 소형빗물이용시설(0.6㎥~2.0㎥) – 지원 : 설치공사비의 90% (150만원~220만원)

기관 (부서)	관련규정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주택)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③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④ 기타 시장이 공익성,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비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1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 – 그린파킹사업(별표2의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적용, 30~70%이내)	보조	그린파킹 지원사업 ① 담장허물기 – 단독주택 : 1면 800만원, 2면 950만원 1면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대 2,750만원) – 아파트 : 주차장 조성비의 50%이내 1면당 70만원, 동 당 최대 5천만원 * 보안시설(도어록 등), 기준금액내 지원가능 ② 자투리땅 주차장 – 주차면 1면기준 200만원(최대 20면) – 최대 1년이상 기능유지 ③ 생활도로 – 담장허물기 참여가옥 50%이상인 골목길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주거지원계정) – 주거지원계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저소득시민, 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 보조 및 대출 2. 주택재개발 및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 3.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주거지원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5.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및 저소득층의 보증보험료 지원 6. 그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 –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보조	희망의 집수리사업 – 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 – 지원 ① 공공주도형 : 가구당 100만원 이내 * 13개 공종내역 수리 (도배장판단열방수,처마,도장,전기 등)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민간참여형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5개 공종내역 수리 (도배장판단열새시,전기) * 시 120만원과 비영리민간단체 매칭

기관 (부서)	관련규정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 등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